

수원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1가단5381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예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체결된 2018.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하여 2002. 10. 2. 대한대출로 4,873,236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03. 6. 4. 주식회사 E에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2003. 7. 31. F 유한회사, 2007. 5. 7. G 유한회사, 2007. 5. 8. 주식회사 E, 2011. 4. 26. H 유한회사, 2019. 2. 22.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으며,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36676호로 위 나.항 기재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0,785,381원 및 그 중 4,873,236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20. 7. 3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3. 26.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C, J, 피고, K, L이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5. 25.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합계 20,406,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는, 부모를 봉양한 피고가 귀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을 뿐, C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1988. 8. 29.부터 2017. 7. 2.까지 망인의 처 M 또는 망인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N 지상 연립주택에 1999. 3. 13.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3. 14. 말소되고, 2002.

3. 11.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으로 정한 근거장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8. 18. 말소된 사실, C가 2021. 7. 20. ‘막내동생에게 1,000만 원의 대출보증을 서게 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동생들이 변호사 비용, 치료비 등을 지불하게 하였고 부모님의 생활비를 동생들이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1/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부동산 목록

1. 강원도 정선군 대 495㎡

2. 강원도 정선군

[도로명주소] 강원도 정선군

블록구조 아스팔트임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4.16㎡, 2층 21.66㎡ 관.

